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824

발의연월일: 2024. 10. 21.

발 의 자:한창민·신장식·장철민

조 국・정준호・윤종오

김재원 • 황운하 • 이춘석

민형배 · 김용민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실질적인 공공성 강화와 투명한 경영을 위하여 공공기관 운영의 주축이 되는 임원 구성에 근로자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 중임.

이에 따라 준정부기관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임원 구성에 「공 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비상임이사의 수를 6명에서 7명으로 변경하고,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 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을 비상임이사에 포함 하도록 임원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8조).

법률 제 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 중 "6명"을 "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호 및 제4호에"를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 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근로자 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임원) ① 공단에는 다음 각	제8조(임원) ①		
호의 임원을 둔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비상임이사 <u>6명</u>	3 <u>7명</u>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비상임이사는 다음 각 호의	③		
자로 하되, 제3호 및 제4호에	<u>제3호부터 제5호까</u>		
해당하는 비상임이사는 임원추	<u>지에</u>		
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			
람 중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임명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 <신 설></u>	5.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 중에서 근로자대표(근로		
	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		
	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의 대표자를 말한다)의 추천		
	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u>받은 사람 1명</u>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